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22호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의 개최도시로서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라.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및 위탁 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올림픽 개최도시 간 교류 지원(안 제7조)
- 바. 포상(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116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jhyoon93@korea.kr

붙임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올림픽 유산을 지속가능한 지역 자원으로써 보존·관리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지역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올림픽"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말한다.
2. "올림픽 유산"이란 올림픽으로 형성된 긍정적이고 사후적인 유·무형의 모든 산물을 말하며,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3. "올림픽 유산사업"이란 올림픽 유산과 성과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시설 사후활용 및 올림픽 시민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4. "시민정신"이란 올림픽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강릉시민들이 참여했던 각종 활동의 목적과 가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림픽이 스포츠를 통한 평화가치 실현과 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올림픽 이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
2. 시민정신을 계승·확산시키기 위한 교육활동 및 교류사업
3. 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
4. 올림픽 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 및 교육
5. 올림픽을 주제로 한 각종 수익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올림픽 유산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올림픽 유산사업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올림픽 유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올림픽 유산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올림픽 개최도시 간 교류 지원) ① 시장은 올림픽의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올림픽 정신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역대 올림픽 개최도시 및 관련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올림픽 개최도시 간의 교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관련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